

**전후 일본 민주화 운동의 리더십 -
이치카와 후사에
이념,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 전략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이지영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년 11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전후 일본 민주화 운동의 리더십 - 이치카와 후사에 이념,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 전략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이지영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 서론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며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개인은 남성만을 전제한 것으로 여성은 배제되어 자유와 평등은 남성만의 권리였고 자유롭고 평등한 남성시민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의 문제와 관심을 다루어왔다. 공적인 문제와 관심을 다루는 정치는 여성의 문제와 관심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과 제도에는 여성의 경험과 이익,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것이었고 그 역사는 길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여성을 발견하고 법과 제도에 있어서 성차별을 시정하려는 여성운동¹은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을 넘어서려는 민주화 운동이며, 여성의 주체성 확립과 성평등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고 하겠다.

19세기 말 일본도 근대 민주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메이지헌법을 공포하고(1889년), 의회를 개설(1890년), 선거도 실시하지만 일본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선거권은 제한선거권으로 국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남성²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었고 이후 제정된 보통선거법(1925년)에서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민법(1898년)은 전통적인 일본의 이에제도³를 법제화한 것으로 가독에게 이에의 전권을 인정하는 한편 가독이 될 수 없는 여성은 무능력자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성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은 전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전후 점령개혁 하에서 본격화되고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 여성참정권이 부여되었고(1945년) 성평등을 천명한 신헌법 제정, 이에제도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성평등과 여성의 주체성 획득은 점령개혁 하에서 일본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점령당국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지만 일본 여성들이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패전 직후부터 일본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일본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 간 연계를 꾀하며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여성운동에 대한 서구 일반의 견해는 일본 특수론에 입각해 있다. 즉, 일본여성운동의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주부페미니즘’ 논의이다. 일본의 여성운동은 정치제도나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사생활과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하며 성평등보다 여성의 모성, 주부로서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운동의 구조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본의 여성운동은 단일이슈 중심, 분권 지향, 지역 중심이라는 분석이다(Gelb 2003, 27-38). 본 글은 이러한 일본 여성운동의 특수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일본 특수론은 전후 일본의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성평등과 그의 제도화 노력, 특히 여성운동이 결집하여 전후 민주화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평등을 점령 초기의 과도한 민주화를 시정한다는 역코스(逆course)속에서 지켜낸 점과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운동을 통해 성평등정책에 있어서의 국제표준을 국내법화해 온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전후 일본의 성평등과 민주화 추진 과정을 이치카와 후사에의 리더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리더란 사회정치적 집합행위를 위한 주체로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이다. 리더십은 리더의 이념(idea), 그리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의 자원동원 능력과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Samuels 2003, 6) 리더의 이념과 사회정치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리더의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가치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험과 이슈는 단일하지 않다. 또한 여성의 이슈로서 성평등을 추구한다고 해도 성평등은 명확한 개념으로서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생물학적 기능의 차이, 즉 남성에게는 없는 임신·출산·수유의 모성기능을 지닌 여성을 남성과 평등하게 처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모성기능을 특별한 가치로서 보호할 것인가, 모성기능의 보호는 평등과 모순되는가, 모성기능은 여성개인의 기능인가, 사회적 기능인가(Scott 1988, 174-207). 성평등에 관한 리더의 이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모성기능을 특수한 가치로서 보호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것인가 운동의 방향이 결정되고 산출로서의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겠다(이지영 2009, 174-175). 이러한 리더의 이념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지지, 물리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가 운동의 성패에 있어 중요하다. 여성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 재정적 자원이 빈약하다. 또한 운동리더의 이념은 기존의 제도와 남성의 기득권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지지, 대량의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자원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가 네트워킹이다. 리더는 여성단체, 다양한 운동단체 간 네트워킹을 통해 부족한 물리적 자원을 보완하고 자신의 이념을 확산, 공유시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조달한다(塩原勉 1989). 리더의 자원과 지지 동원 전략, 나아가 운동의 전개를 촉진 또는 제약하는 것이 정치적 기회구조이다. 정치적 기회구조란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리더가 직면하는 정치적 기회와 제약의 구조라고 하겠다. 리더가 이러한 기회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는지에 따라 운동의 성과는 달라진다.⁴

본 글의 목적은 전후 일본의 민주화운동의 리더 이치카와 후사에에 천착하여 이치카와가 자신의 이념에 어떻게 지지와 자원을 동원하고 정치적 기회구조를 이용했는지 분석함으로써 이치카와의 리더십이 일본의 성평등 추진과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이치카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다. 특히 전후 이치카와의 성평등 추진과 민주화운동을 분석하거나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다룬 연구는 거의 없고 일본의 여성운동사에서 일부분으로 다루거나(田中寿美子編 1969; 1975; 伊藤康子 1974; 鈴木裕子 1989), 이치카와의 전진의 여성참정권획득운동을 고찰한 것(菅原和子 2002)이 전부이다. 이치카와 관련 자료는 자서전⁵ 중심으로 남아있으며 1994년에는 이치카와기념회가 1916년부터 1981년까지의 이치카와 관련 단체의 기관지, 잡지, 신문에 남긴 이치카와의 저술을 모아 출판



한 자료집⁶이 있다. 본 글은 이치카와 후사에의 리더십에 천착하여 전후 일본의 성평등 추진과 민주화 과정을 살펴본 최초의 분석으로서 이치카와와 일본의 사회운동 연구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의 주요 분석대상은 전후의 매춘방지법제정운동과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운동(이하 협약비준운동), 이상선거운동이다. 매춘방지법(1956년)⁷은 자민당에서 사회당, 공산당까지 좌·우, 보수·혁신을 넘어 사회단체가 연대한 사례이고 그 중심에 이치카와가 있었다. 이치카와는 1953년 참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중·참의원의 초당파 여성의원단을 조직하여 일부 남성의원들과 업자들의 맹렬한 반대 속에서 유엔의 인신매매금지조약의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매춘방지법제정운동은 70년대의 일본남성들의 섹스관광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은 196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선언을 1979년에 법제화한 것으로 협약의 비준은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은 유엔의 기치 아래’를 표방했던 ‘유엔세계여성의 10년(1975년~1985년)’의 주요 목표였다. 이치카와는 협약 서명과 비준을 위한 통일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신구(新舊), 조직의 대소, 이념의 보수·혁신을 넘어 여성단체를 규합하고 기타 사회단체와 연대하며 경비조달과 운동 조직의 운영, 운동의 추진 등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유엔의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 추진을 정치적 기회구조로 인식하고 적극 이용하며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국내법 정비와 협약 비준(1985년)으로 성과를 거두게 된다. 끝으로 이상선거(理想選挙)운동은 점령개혁의 실시로 여성참정권이 부여되자 여성참정권의 주체적인 행사를 위해 여성후보자의 발굴과 여성유권자 중심의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의회제민주주의의 건전화를 위해 이치카와가 조직한 운동이었다. 이치카와는 이상선거를 통해 정치의 주체로서 여성을 호명하고 금권정치를 비판하였는데 자신의 참의원선거에서부터 이상선거를 관철하였다. 이치카와는 1967년에는 도쿄도(東京都) 도지사선거에서 ‘미노베(美濃部)후보의 이상선거를 지원하는 모임’에 참여하였고 이후 이상선거운동은 특히 지방선거에서 힘을 발휘하여 혁신지자체 탄생과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로 이어져 일본 정치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추진하게 된다.

본 글은 이러한 매춘방지법제정운동, 여성철폐협약비준운동, 이상선거운동을 이치카와의 이념과 정치적 기회구조, 자원동원전략으로서의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이치카와의 리더십이 전후 일본의 여성운동,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치카와는 1893년 출생하여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를 거치며 전전에 여성참정권운동을 주도하였고 전시기 운동의 후퇴 속에서 전쟁에 협력하였으며 전후 점령개혁 하에서는 공직추방을 경험, 추방해제와 동시에 여성운동을 부활시켜 여성운동가로서, 여성정치가로서 1981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평등과 일본 정치의 민주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전후 이치카와 리더십의 구체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전전의 이치카와의 운동과 그것이 당시 여성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전전의 이치카와의 민주화운동

전전의 일본의 여성운동은 리더와 리더의 이념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모성보호운동으로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가 운동의 리더였다. 히라쓰카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모성기능과 역할을 중시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여성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이치카와가 추진했던 여성참정권운동으로 이치카와는 성평등을 중시하고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인식했다. 셋째는 정보다는 계급에 관심을 갖고 자본주의로부터의 무산계급여성의 해방을 중시하는 무산여성운동으로 노동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그 요구를 실현시킬 무산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한 리더는 아마카와 키쿠에(山川菊栄)였다(山下悦子 1988).

여성참정권운동의 리더였던 이치카와는 1893년에 아이치현(愛知県)의 한 농가에서 4남 3녀의 3녀로 출생하였다. 경제적으로 부농은 아니지만 중간층이었고 일찍 세상을 여인 차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교육을 받을 만큼 교육열이 높은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치카와 자신이 후일 술취하듯이 일상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업보’라며 울며 인내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치카와가 생애에 걸쳐 관찰하려 했던 성평등 이념의 원점이 되었다(市川房枝 1974, 2-6).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원과 신문기자를 거쳐 도쿄에 상경한 이치카와는 개인 영어교습학원에서 히라쓰카와 조우, 1919년에 일본 최초의 자주적, 시민적 여성단체인 신부인협회를 결성하게 된다.⁸ 신부인협회는 당시 여성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치안경찰법제5조개정운동, 화류병남자결혼제한법제정운동을 펼치는 등 여성성을 선명히 하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이쇼데모크라시 시기에 여성의 입장에서 민주화운동을 담당하였다. 여성운동의 시작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여성의 참정권 요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페미니즘의 제1의 물결’에서부터이다. 1901년 제정된 치안경찰법은 제5조에서 여성의 집회와 결사를 금지했는데 페미니즘 제1의 물결의 영향을 받은 이치카와는 이러한 치안경찰법의 개정이야말로 일본 여성참정권운동의 첫걸음으로 여겼다(市川房枝記念會 1994, 1卷: 85).

그러나 신부인협회의 주된 운동방향은 모성보호였다. 신부인협회의 강령은 1. 부인⁹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남녀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2. 남녀의 가치동등관에 입각하여 그 차별을 인정하고 협력을 주장한다, 3. 가정의 사회적 의의를 선명히 한다, 4. 부인, 어머니, 자녀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그에 반하는 일체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성평등과 모성보호를 함께 내걸고 있지만 신부인협회는 엘렌 케이(Ellen Key)의 모성사상에 영향을 받은 히라쓰카가 모성보호운동을 위해 발족한 것이다. 엘렌 케이는 모성과 아동의 존중을 주장한 스웨덴의 여성운동가로 엘렌 케이의 모성사상에 심취한 히라쓰카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모성기능을 강조하고 모성보호의 이념 하에 운동을 펴나가자 1921년 이치카와는 신부인협회를 나와 도미한다(鈴木裕子 1989, 68-91; 市川房枝 1974, 61). 1921년은 미국의 여성참정권이 실현된 이듬해로서 미국의 여성참정권운동과 전미여성당(National Women's Party: NWP)의 대표 앨리스 폴(Alice Paul)을 중심으로 법률상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헌법개정운동이 시작한 해이다. 미국의 여성참정권 실현과 앨리스 폴과의 만남은 이치카와가 성평등 이념을 체계화하고 향후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치카와에게 성평등은 양성 간의 기회의 평등이며 그것이 법률상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비로써 불평등에 대한 시정 요구가 합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치카와는 이러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중요하고 법제도를 결정하는 정치, 그러한 정치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귀국 후 여성참정권운동을 전개하게 된다(市川房枝 1974, 117-120).

1924년 1월 귀국한 이치카와는 부선희득동맹¹⁰을 결성하고 보통선거운동에 참여하지만 이듬해 통과된 보통선거법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이치카와는 1928년 부인선거권획득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여성참정권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1930년에 제1회 부선희득동맹전국대회(이하 부선회)를 개최하였다. 도쿄, 니가타(新潟), 아키타(秋田),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広島), 가나자와(金沢)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치카와의 여성참정권운동의 전략은 세 가지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정치에서의 여성의 주체성을 환기시키는 여성의 정치교육 그리고 여성단체의 네트워킹이다. 이치카와는 이념상 사회주의와는 일선을 그으면서도 여성참정권운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정치에서의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무산여성운동과의 연계를 꾀하였다. 좌파 노동농민당의 관동부인동



맹, 중간파 일본노동당의 전국부인동맹, 우파 사회민주당의 사회민중부인동맹으로 분열되어있던 무산여성단체를 규합하여 여성참정권운동과 연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치카와가 일관되게 탈당파, 탈계급의 ‘중립’을 지향하고 운동방법으로 의회에 대한 청원 등 합법적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전시하의 전쟁협력과 더불어 운동의 성격에 있어서 자유주의 부르조아 여성운동으로 비판받기도(鈴木裕子 1989, 5-25) 하지만 중립의 지향하고 합법적 운동방법의 선택은 좌·우, 보수와 혁신의 대립을 넘어 운동의 자원을 동원하는 네트워크와 일반대중의 지지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었다(菅原和子 2002, 113-136).

이러한 이치카와의 성평등 이념과 네트워크 전략, 제1파 페미니즘의 기회구조의 이용은 전전 일본의 여성운동이 모성보호 중심으로 전개되고 사상적 측면에서의 논쟁이 강했던 시기에 대중은 물론 여성 자신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은 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서서히 인식시키고 여성이 민주화의 주체로서 운동하는 실천의 공간을 열어갔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상해사변, 1936년의 2.26사건 등 일본의 군국주의의 확대와 정당 정치, 의회정치가 붕괴하면서 여성운동은 변화한다. 1931년 문부성 지도하에 가정주부의 사상동원을 목적으로 전국의 어머니회, 주부회, 부인회를 규합한 대일본연합부인회가 발족되고 1932년에는 군부의 지원으로 국방에 있어서 부인의 책임을 다한다는 목적 하에 대일본국방부인회가 발족되어 서민층의 여성까지 조직화된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운동의 주류였던 모성보호운동은 우생사상과 천황제국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결국 여성의 모성은 국가모성으로 확대되어 전쟁에 협력하게 된다. 여성참정권운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7년까지 부선대회가 개최되지만 이미 1934년부터 퇴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치카와는 강화되는 군국주의에 대해 비전쟁, 평화, 국제협조주의 등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운동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여성참정권운동 역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선거정화운동과 모성보호운동에 통합되어 전쟁 협력의 길을 걷게 된다. 무산여성운동은 자체의 분열과 사회주의, 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약화되었다(鈴木裕子 1989).

IV. 전후 이치카와의 민주화운동

1. 전전과 전후 이치카와 운동의 단절과 연속

일본의 패전과 전후 일본의 민주화, 비무장화를 목표로 추진된 점령당국의 개혁은 전시 하에 억압되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신 세력에게 정치 참여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고 전후 여성정책의 설계와 여성운동 부활의 정치적 기회가 되었다. 이치카와도 패전 직후인 1945년 8월 25일 전후대책부인위원회를 결성하고 정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고 9월 24일 개최된 총회에서 ‘민주주의일본’의 재건을 위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한편 여성참정권운동을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로서 신일본부인연맹¹¹을 조직하지만 공식추방의 대상이 되어 활동을 중지한다. 전시기 대일본언론보국회 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원인이 되어 1947년 3월 24일부터 1950년 10월 13일까지 공식추방된 이치카와는 점령 초기 여성정책의 제도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児玉勝子 1985, 8-50).

여성정책의 제도설계는 점령당국의 민정국과 온건한 사회주의자로 전전에 사회주의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무산여성운동을 전개해온 야마카와 기쿠에, 전후 재건된 각 노조의 여성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



였다. 여성정책은 점령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민주주의의 하나의 척도, 일본 민주화의 상징으로 정의되었다. 점령당국은 일본을 전쟁으로 이끈 군국주의의 기반을 천황제와 가족제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국체로 보고, 국체의 해체라는 발본 개혁의 단초로서 공적·사적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추진한다. 1945년 8월 여성참정권 부여, 1946년 공창제 폐지, 1947년 공적·사적영역에서의 성평등을 규정한 신헌법 제정, 이에제도의 폐지와 부부동권을 규정한 민법개정, 노동여성의 모성보호를 규정한 노동기준법 제정이 속속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참정권을 인정한 중·참의원선거법과 혼인·이혼, 재산권·상속권·양육권에 있어서의 부부동권을 규정한 신민법을 제외하고 신헌법의 성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법은 제정되지 않은 채 1947년 여성정책추진기구인 노동성부인소년국이 설치되어 노동여성의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은 추진되었다(西清子 1985; 스ーザン ファー 1987, 460-477; 村上千賀子 1992, 5-28; 이지영 2008a, 355-366).

점령개혁에 따른 공직추방은 이러한 일본의 여성정책의 제도설계에 이치카와의 참여와 운동을 제한하는 기회구조로 작용하는 한편 전쟁협력과 더불어 전후 이치카와 운동에 있어 국가주의와의 단절을 초래했다. 이치카와는 공직추방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강화하며 국가에 포섭되지 않기 위해 정부 보조금은 일체 거부하고 운동의 자주성·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성평등의 법제화와 여성이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전의 운동 이념과 의회주의, 여성계몽, 네트워킹이라는 운동 전략은 전후에도 연속되었다. 이치카와는 전후 점령개혁과 일본의 민주화 요구 속에서 성평등이 법률로서, 더 나아가 국제조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국제법상의 권리라면 성평등은 국가가 국내 정책에 의해 간단히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치카와는 성평등의 법제화와 그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여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여성의 정치 참여와 주체성 획득은 성평등 실현의 첫 단계이자 민주화의 수단이라고 인식했다. 이치카와에게 있어 정치의 민주화란 정치가 소수에 의해 점유되지 않고 국민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의회제민주주의가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제민주주의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자각된 유권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지지, 선출하고 선출 후의 의회 활동을 감시하며 차기 선거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児玉勝子 1985; 市川房枝 1999). 이치카와는 전전의 국가주의와 단절하며 운동의 자주성·자율성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탈당파, 탈계급의 ‘중립’을 지향하며 성평등의 법제화와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해갔다. 성평등을 위한 법제정·개정 운동, 운동의 자율성 유지, 여성의 주체성 회복, 네트워킹을 통한 운동에의 지지와 자원 동원은 이치카와가 전후 일본의 성평등 실현과 민주화 과정에 남긴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전후 이치카와의 운동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점령이 종료되면서 점령개혁을 수정하려는 역코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개혁의 성과를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51년부터 노동성부인소년국 폐지론이 대두하고 52년에는 공창제 부활이 거론되었다.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고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가 발족되면서 헌법개정 논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자유당 내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고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헌법조사회위원장은 부부동권과 개인의 존중을 규정한 헌법 24조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이에의 관념이 전혀 없는 것이 유감’이라며 결혼을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 간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개인 본위의 사고’는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제심의회에 이에제도 부활을 위한 민법개정을 자문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성평등의 정책화가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이루어졌다면 전후 일본의 여성운동은 단체 간 이념의 차이를 넘어 공창제도부활반대협의회, 재군비반대부인위원회, 이에제도부활반대연락협의회를 결성하여 개혁의 수정을 저지한 것이다(女たちの現在を問う会 1986). 이러한 네트워킹의 중심 리더의 한 사람이 이치카와였다. 추방해제 후 이치카와는 일본부인유권자동맹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운동을 재개하였고 역코스는 여성유권자의 올바른 한 표의 행사로 충분



히 방지할 수 있다며 여성유권자의 자각을 촉구하는 한편 개혁 수정의 저지에 있어서 여성단체의 연대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市川房枝記念會 1994, 5卷: 60, 6卷: 427-430).

전후 운동의 연대를 통해 성평등 개혁을 지켜낸 여성운동은 또한 반전평화운동인 모친운동을 전개한다. 국제민주여성연맹이 세계 각국에 모친대회를 개최할 것을 호소하자 일본에서도 다시는 아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어머니들의 소망에 호응하여 1955년 일본모친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모친운동이 미군기지반대운동 등 점차 반정부적인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자 ‘모친대회는 빨갱이’, ‘위장된 좌익의 평화운동’이라는 흑색선전이 퍼지기도 하고 평화문제를 둘러싼 사회당과 공산당의 노선 대립이 모친운동에도 반영되어 내부적으로 분규를 겪었다. 여성과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룬 반전평화운동은 1960년 안보투쟁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그것이 좌절되면서 노동운동과 함께 후퇴하고 더 이상 통일된 운동으로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전전의 모성보호운동의 리더였던 히라쓰카는 전후 평화주의자로 전신, 평화운동의 사상적 지주가 되어 전후 모친운동으로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전의 모성보호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특수성, 남성과는 다른 여성성,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서만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는 모친운동, 평화운동은 어머니 그 자체가 차별 받는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인식과 주체성은 약했다(아마시다 영애 1996, 264-267).

한편 전전의 무산여성운동의 연속 상에 있으면서 전후 노조의 재조직으로 여성정책의 역코스 저지와 평화운동의 한축을 담당했던 노조의 여성부는 총평,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의 여성부로 재편되어 운동의 목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 타파에 의한 노동계급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지 않으며 전후 고도 경제성장기의 완전고용, 소득배증계획의 정책 하에 노동성부인소년국과 협력하며 증가하는 노동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생리휴가·산전산후휴가 등 노동여성의 모성보호로 전환했다. 도쿄도교원조합여성부와 같이 성평등 요구를 통해 남녀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 경우도 있지만 그와 같은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朴仁京 2006, 76-79).

이러한 가운데 정치과정에서 성평등을 이슈화하고, 여성의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일본의 정치민주화를 추진한 것이 이치카와이다. 이치카와는 단체 간 네트워크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특히 국제적 정치기회구조를 이용하며 운동에 지지와 자원을 동원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2. 매춘방지법제정운동

공직추방에서 해제된 이치카와는 1953년 4월 23일 참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다. 정치가로서 이치카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중·참의원여성의원단(이하 여성의원단)의 결성이다. 참의원 여성의원 5명과 중의원 여성의원 8명 총 13명으로 구성된 여성의원단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부인소년국폐지반대와 매춘처벌법제정이었다(児玉勝子 1985, 100-101). 당시 성매매문제는 최대의 여성이슈였으며 이치카와는 여성의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매매문제로 이를 방치해서는 성평등은 요원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武田清子 1994, 34-35; 市川房枝記念會 1994, 5卷: 121-123).

공창제 폐지 후 일본에서 성매매문제가 이슈화 된 것은 내무성이 1945년 8월 18일 연합군의 일본 주둔을 앞두고 위안시설 설치에 관한 지령을 내린 것에서 비롯된다. 이 내무성지령은 외국병사가 주둔할 경우 위안시설을 요구해올 것이니 미리 준비해둔다는 것과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것이 취지로 일정 구역에 한해 성적 위안시설, 오락장 등을 설치하고 경찰서장이 이러한 위안시설의 영업에 대해 적극 지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지령에 따라 정부와 업자는 각각 5천만 엔을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 특수위안시설



협회를 설립하고, '전후 처리 국가적 긴급시설에 신일본여성을 구함'이라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여 천 명 정도의 여성을 채용하였다. 위안시설을 국가시설로 표현하고 일본여성의 성매매를 통해 전후 처리를 피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여성 방과제'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당시의 일본정부의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성병이 만연하자 점령당국은 '매춘금지에 관한 칙령 제9호'를 공포하고, 일본정부는 1948년 매춘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일본에서 최초로 제출된 성매매금지에 관한 법안이었으나 성매매여성과 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심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1953년에도 매춘처벌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중의원 해산으로 성립되지 못했다(児玉勝子 1985, 103-106).

이러한 경위가 있는 매춘처벌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이 바로 여성의원단이었다. 여성의원단과 연계해 국회 밖에서는 여성단체가 매춘금지법제정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동을 펼쳤고 노동성부인 소년국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성의원단이 발의한 매춘처벌법안은 1954년에는 계속심의, 1955년에는 중의원 해산으로 폐안 처리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매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가고시마현(鹿児島県)에서 건설업자가 이권을 위해 유명인사에게 여중생의 성 접대를 제공한 데 이어 도쿄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가 발각된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없어 성매매 남성이나 업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현실이 성매매 처벌에 대한 지지를 확대시켰다. 이치카와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며 매춘금지법 제정운동을 강화해나갔다. 이치카와는 매춘금지법제정촉진위원회에 참석하는 한편 여중생의 성 접대사건이 발생한 가고시마현 현장을 방문하면서 매춘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의원단은 1955년 제19회 국회에 성매매업자의 처벌을 강화한 매춘처벌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매춘처벌법안은 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성매매 여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업자들은 법안을 폐안시키기 위해 정치가와 관료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업자, 성매매여성 10만 명의 자민당 입당 안을 기획하기도 했다. 법안 심의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여성의원단이 제출한 법안은 부결되고 정부가 내각에 매춘문제심의기관을 설치하고 행정조치, 입법조치, 예산조치 등 종합대책을 책정하여 다음 국회에 제출한다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결국 이 부대결의에 따라 내각에 매춘대책심의회가 신설되고 정부 제출의 매춘방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956년 5월 21일 성립되었다(児玉勝子 1985, 107-111).

성립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금지 대상은 관리 성매매에 한하며 성매매여성의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매매 남성은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관리 성매매 금지에도 1년간의 유예를 두고 있다. 매춘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업자들은 기득권옹호대회를 열어 업자에 대한 보상과 법 시행의 연기 운동을 벌였다. 성병예방자치회는 법 시행을 연기시키기 위해 자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조합연합회를 조직시켜 생활권옹호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업자들의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매춘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업자의 업종 전환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가 성매매 단속, 업자의 업종 전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자 이치카와는 매춘방지법 시행 준비를 서두를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児玉勝子 1985, 112; 市川房枝記念会 1994, 5卷: 242).

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여성의원단의 매춘처벌법안이 부결되면서도 내각제출법을 예고한 부대결의가 채택되어 결국 매춘방지법이 제정되게 된 데에는 이치카와의 영향이 컸다. 1956년 12월 유엔가입을 앞두고 있는 일본정부는 유엔 중시의 외교를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치카와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원단은 이를 정치적 기회구조로 이용하며 매춘처벌법이 없으면 1951년 발효된 인신매매금지조약에 비준할 수 없다며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매춘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市川房枝 1999, 135-140). 1924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 국제노동기구 도쿄지국에 근무한 이치카와는 정부, 자본가, 노동자 대표와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노동협회의부인노동위원회 간



사로 활동하며 국제조약 비준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었고 여성 관련 국제노동조약의 비준을 촉진시킨 경험의 축적이 있다(市川房枝 1999, 35-37).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다난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마지막 여성해방으로 일컬어졌다.

3.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운동

이치카와가 매춘방지법제정운동에서와 같이 외부적 정치기회구조를 적극 이용한 것이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운동이다. 이치카와가 참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복귀한 1974년은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을 이슈화하고, 각국이 추진해야 할 성평등정책의 국제표준 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때이다.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은 유엔의 기치 아래’를 내건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 1975년에서 1985년까지를 ‘세계여성의 10년’로 정하고 멕시코에서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멕시코 세계여성회의는 성평등을 이슈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최초의 정상회의였다. 세계여성의 10년 동안 유엔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협약의 비준이다. 유엔은 1980년 제2회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에서 협약 서명식을 개최하고, 세계여성의 10년의 마지막 해인 85년까지 각국의 협약 비준을 성사시킨다는 타임테이블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國際連合広報局 1995).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성에 근거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으로 규정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부정한다. 각국의 협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협약국은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신법을 제정하며 성평등의 국제표준인 협약의 국내 정책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 추진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협약국이 비준 1년 후 제출하는 첫 번째, 이후 4년마다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심사해 국가별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國際女性の地位協會 1992, 8).

성평등 추진에 있어서 유엔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인 ‘페미니즘의 제2의 물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세기 말 여성참정권운동으로 시작된 페미니즘의 제1 물결에 이어 1960년대 말에 확산된 제2의 물결은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사적 영역에서의 가부장제 해체와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완전한 참여 확보를 통해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제2 물결과 이에 대한 유엔의 반응은 일본의 성평등 추진에 있어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치카와는 성평등 이슈 아래 여성단체를 새롭게 재편하고 여성단체가 정치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기회로 이용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세계여성의 해 일본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대회 이후 이치카와는 ‘세계여성의 해 일본대회결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락회’(이하 연락회)를 결성하고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협약 비준을 위한 통일된 운동을 전개하였다(國際婦人年連絡會 1989).

일본에서 페미니즘의 제2 물결의 영향 하에 성평등과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주장하는 운동체로서 연락회 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1970년 10월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여성해방집회를 시작한 리브¹²단체들이었다. 그러나 리브운동은 여성의 권리와 주체성을 아내와 어머니로서 담당하는 재생산기능, 낳는 성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신체에 제한시켰다. 또한 변형되어야 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 사회여야 한다는 성분리와 운동의 급진성으로 인해 언론매체와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리브운동이 개척한 여성의 주체성은 매몰되어 갔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여성의 해를 계기로 결성된 연락회가 리브의 주장을 이어갔으나 리브단체들에 비해 성평등을 몸의 주체성 회복에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확대시키고 급진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세계여성의 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부와 언론매체의 변화를 적확하게 파악하며 여론을 통해 성평등 주장을 확산시켰다. 이로써 70년대 전반의 리브단체들과는 달리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江原有美子 1986, 276-292).

연락회는 초당파 여성의원단을 조직하여 의회활동을 통해 성평등의 법제화에 주력해 왔던 이치카와가 사회당의 다나가 스미코(田中寿美子) 참의원 의원과 함께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51개 여성단체를 네트워킹하여 조직한 것이다. 이치카와는 성평등과 협약 비준을 이슈화하며 여성단체를 결집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연락회는 총평, 동맹, 중립노련 등 3개 노조의 여성부에서 직능단체, 종교단체, 보수·중도·무당파에서 혁신까지 각 여성단체를 결집하며,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재정적 자원을 강화하고 성평등의 국제적 조류를 이용하였다. 연락회는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압력단체로 부상하며(山口みつ子 1992, 53-70) 전국적으로 협약비준운동을 이끌어갔다. 전후 일본의 여성단체가 성평등 이슈 아래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연대한 것은 점령개혁 수정 저지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멕시코 세계여성회의의 참석 이후 여성정책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1975년 9월 총리부에 수상을 본부장,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부인문제기획추진본부와 부인문제기획추진회의, 그리고 부인문제실을 발족하였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협약이 채택되자 일본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협약에의 서명을 미루려는 태도를 취했다. 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의 개정과 성차별을 금지하는 성평등법 제정, 여학생들만 이수하고 있는 가정과 수업의 교과내용의 개정 등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이지영 2008b, 456). 연락회는 부인문제기획추진회의, 여성의원들과 연계하며 협약비준운동을 전개했다. 이치카와는 의회에서 협약 서명을 보류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 제2회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세계여성회의의 참석이 결정되자 연락회는 수상과 외무성, 관계 성청에 대해 세계여성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면서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본의 수치라며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코펜하겐 여성회의에는 다카하시 노리코(高橋典子) 수석대표 등 13명의 정부대표와 여성의원들이 고문의원단으로 참석하였는데 회의 직전까지 서명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해 여성의원들도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의 보이콧 전술을 펼쳤다. 결국 일본 정부는 협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Kobayashi 2004, 84-86).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자 연락회는 협약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며 가정과 수업 남녀필수화와 성평등법제정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일본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나서 국적법을 개정하여 모부계혈통주의를 도입했고, 가정과 수업을 남녀필수로 바꾸었으며 협약 비준에 있어서 최대 쟁점이었던 성평등법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으로 성립되었다. 이로써 국내법 정비를 완료한 일본은 유엔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1985년 세계여성의 10년의 마지막 해에 협약을 비준하였고 1987년 첫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981년 향년 86세로 생을 마감한 이치카와는 협약 비준을 지켜보지 못하는 못했지만 법률로서 성평등을 규정하는 것이, 나아가 국제조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온 이치카와의 유언에 따라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이 함께 묻혔다.

4. 이상선거운동

이상선거운동은 이치카와가 정치에서의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여성유권자의 손에 의한 깨끗한 정치의 실현으로 의회제민주주의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1953년 자신의 첫 참의원선거 때부터 관철해온 운동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명선거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상선거는 합법적이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운동은 하지 않으며 선거의 본지로 돌아가 유권자가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자금을 분담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市川房枝記



念會 2003, 9). ‘이상선거’하면 일반적으로 선거비용을 들이지 않는 선거로만 이해되기 쉬운데 이상선거란 이치카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치카와추천회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하고 이치카와를 추천후보로서 등록함과 더불어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상선거를 위해 후보자는 승낙서에 날인하고 라디오방송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선거비용은 유권자의 기부로 충당하지만 기부권유는 하지 않으며 1인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기부는 받지 않고 선거 비용과 지출 내역을 유권자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한편 선거법을 준수하고 법이 허용하더라도 트럭이나 확성기 사용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児玉勝子 1985, 94).

이치카와는 이상선거로 처음 도전한 1953년의 참의원선거 당선 이후 이상선거로 3선을 이루어 내었다. 3회에 걸친 참의원선거에서 도쿄도지방구에 입후보한 이치카와의 득표수와 선거비용은 다음과 같다(市川房枝記念會 2003).

[표 1] 이치카와 이상선거의 득표수

선거일	유권자총수	투표율	유효투표총수	유효투표에 대한 득표율	이치카와 득표수	후보자수
1953.4	4,003,987	44.82	1,665,380	11.5	191,539	14(2위당선)
1959.6	5,660,058	49.39	2,470,490	11.85	292,927	23(2위당선)
1965.6	6,671,370	61.06	3,867,916	12.84	496,795	39(4위당선)

출처: 市川房枝記念會 2003

[표 2] 이치카와 선거비용 일람

선거일	이치카와 선거비용	법정선거비용	법정선거비용에 대한 비율
1953.4	186,886엔	1,559,600엔	11.99%
1959.6	784,510엔	3,732,017엔	21.02%
1965.6	1,288,677엔	6,300,300엔	20.45%

출처: 市川房枝記念會 2003

[표 3] 이치카와추천회의 수지 일람

선거일	수입		지출			잔액
	기부총액	인수	선거비용	추천회비	계	
1953.4	490,119엔	270명	186,886엔	74,152엔	261,038엔	229,081엔
1959.6	1,491,386엔	4,352명	784,510엔	427,086엔	1,211,596엔	279,790엔
1965.6	3,505,199엔	7,659명	1,228,677엔	392,645엔	1,681,323엔	1,823,877엔

출처: 市川房枝記念會 2003

이치카와는 이상선거를 통해 금권정치와 정치부패를 막을 수 있고, 유권자가 원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



할 수 있으며 소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선거가 의회민주주의를 건전하게 하고 일본 정치를 민주화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선거를 보급하기 위해 이치카와는 1959년 11월 28일 이상선거보급회를 결성하였다. 이상선거보급회의 회원 선서를 보면 우선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선거법에 정해진 1인분의 선거비용(1959년 현재 중의원의원은 7엔)을 직접 기부하여 격려한다, 선거위반을 발견했을 경우는 후보자 또는 운동원에게 주의를 준다, 자신이 선출한 의원의 행동을 지켜보고 의원이 공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의원으로서의 공무 이외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의원은 공약을 지키며 그 실행을 위해 노력한다, 의회의 규모를 강연회·인쇄물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린다, 의원으로서 받은 세비·보수 등을 공개한다는 것이다(児玉勝子 1985, 165-166). 이치카와 또한 참의원 의원으로서 성실히 이상선거보급회의 선서를 지켜나갔다. 매년 의정활동을 지면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고해왔다. 보고 내용은 국회의 규모, 주요 법안에 대한 자신의 태도,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자신의 국회출석부, 세비, 기부 내역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였다(市川房枝 1999, 71-72).

이치카와는 이상선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치와 돈의 흐름을 조사 발표한다. 1960년 11월 총선은 2천만 엔을 쓰면 당선하지만 천만 엔을 쓰면 떨어진다는 2당1락, 또는 3천만 엔을 쓰면 당선하지만 2천만 엔을 쓰면 떨어진다는 3당2락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돈이 드는 선거였다. 이상선거보급회 대표간사로서 이치카와는 후보자와 정당 및 정치단체의 선거비용, 은행·기업별 정당과 파벌에의 정치현금, 혁신단체의 혁신정당에 대한 정치현금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선거자금의 흐름을 밝혔다. 이치카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자금원은 재계와 노조였다. 이치카와는 자민당이 친기업적 정책을 펴는 이유, 자민당의 파벌이 번성하는 이유, 사회당이 총평의 의사에 좌우되는 이유가 재계와 노조로부터의 자민당, 사회당에 대한 정치현금이 있다고 보았으며 설탕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관의 세금이 인하된 것, 일본의사회가 의료비 인상의 목적을 달성한 것 등 이익유도정치를 정치자금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했다(市川房枝記念會 1994, 6卷: 123-138).

이치카와는 이러한 정치현금을 매개한 이익유도가 정치를 부패시킨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이치카와는 정치자금규정법으로 기업, 단체, 노조로부터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 기부를 인정하며 개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면세 조치할 것, 정당과 정치단체의 운영자금·선거비용은 당원의 당비로 충당하는 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市川房枝記念會 1994, 6卷: 139-140). 또한 현행 중선거구제의 선거제도가 금권정치를 조장한다고 보고 소선거구제비례대표병용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市川房枝記念會 1994, 6卷: 332-338).

트럭도 화성기도 사용하지 않고 돈도 들이지 않고 라디오방송 외에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선거로는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치카와가 참의원선거에서 3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선거에 대한 이치카와의 이념과 실천이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1년 4선의 실패를 계기로 이치카와는 이상선거를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 특히 지방선거에 주력하여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하고 지지하기 위해 이상선거보급회를 이상선거추진시민회로 발전시킨다. 1967년의 도쿄도지사선거를 앞두고 이치카와는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혁신무소속후보의 지지를 표명하고 여성도민에 의한 ‘미노베후보의 이상선거를 지지하는 모임’을 주도하며 미노베의 이상선거를 지원했다(理想選舉推進市民の會 1990, 55).

이후 이치카와는 혁신무소속 후보를 지지했으며, 여성후보의 발굴에 힘을 기울였다. 이치카와 자신 또한 1974년, 1980년 참의원선거에서도 이상선거운동을 관철하며 당선되었다. 이치카와는 이상선거는 이치카와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수한 것이 아니라 자립한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으로 보편적인 시민운동이며 시민에 의한 입법을 꾀하는 운동으로 파악했다. 자립한 개인, 시민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 역



할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여성유권자였다.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올바른 표를 행사할 때 일본의 정치 부패를 막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건전해진다는 것이다(市川房枝記念會 2003). 이치카와는 이상선거운동을 통해 여성유권자를 결집시키고 이상선거추진시민회를 중심으로 학자, 기타 시민단체, 여성단체를 네트워킹하며 55년 체제하의 보수 이익유도정치를 타파하고자 했다. 선거를 유권자의 손에 돌려주고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를 세우고 선출하여 의회에 보냄으로써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상선거운동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자민당 보수정치에서 일탈을 보이는 신중간대중과 금권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도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해 나갔다. 이러한 이상선거는 지방선거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일본의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지방의회의 여성대표성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V. 결론

이상으로 이치카와의 리더십을 매춘방지법제정운동, 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운동, 이상선거운동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치카와가 일본의 성평등과 민주화 추진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이치카와는 성평등은 양성 간의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으며 여성이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할 때 민주주의는 건전해질 수 있다는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페미니즘의 제1, 제2 물결과 성평등 추진에 있어서의 유엔의 이니셔티브를 적극 국내 운동과 연계시키며 정치적 기회구조를 포착하고 이용하는 한편 다양한 운동단체, 여성의원, 정부와 비정부 간 네트워킹을 통해 일반대중의 지지와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전전부터 여성참정권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의 성평등과 정치 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이치카와는 국가에의 포섭과 전쟁협력, 공직추방의 경험을 분절점으로 국가주의와 단절하고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유지하며 운동의 자주성·자율성을 지켜나갔다. 이러한 이치카와의 리더십은 일본에서 여성해방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성매매방지과 성평등 이념을 정책화하고,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통해 일본의 풀뿌리민주주의의 강화에 기여했다. 운동의 자율성 유지와 여성의 주체성 확립, 정치적 기회구조의 이용과 네트워킹 전략은 이치카와가 전후 일본의 성평등 실현과 민주화 과정에 남긴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치카와 사후 3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운동 리더의 부재, 이념의 부재,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 운동 단체의 약체화에 직면하고 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걸쳐 보수에서 혁신에 이르기까지 운동의 제1세대들이 사망하고 2세대들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2세대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운동의 후계자들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운동 단체의 고립과 약체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60년대 말부터 페미니즘의 제2 물결의 영향으로 각 대학에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고 80년대 말부터는 젠더론이 성장하면서 여성학 전문가가 형성되지만 운동과 학계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성정책추진기구와 심의회의 관료화가 진행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운동가와 여성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치카와가 국가주의와 단절하며 지켜냈던 운동의 자율성, 자주성은 이제 국가가 아닌 자본과 경제적 가치에 포섭되어 퇴조하고 성평등 이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의 수렴을 보이며 다시 여성성과 여성의 모성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치카와에게 정치적 기회구조로 작용했던 유엔 등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 추진이 테러와의 전쟁, 연이은 아시아, 미국, 유럽 발 경제위기 앞에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로부터 운동의 리더를 육성하고, 경제적 가치와 보수주의에 포섭되지 않도록 성평등 이념을 선명히 하며, 그러한 리더와 리더의 이념에 어떻게 지지와 자원을 동원할지 어려운 과제이지만 전후 일본의 성평등과 일본 정치의 민주화를 추진해온 이치카와의 리더십이 남긴 유산을 재조명하고 재구성하며 이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주(註)

- ¹ 본 글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경험, 여성의 이슈, 여성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운동으로 정의한다(Beckwith 2000, 437).
- ² 당시 선거권을 부여받은 남성은 전체 인구의 1.1 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 ³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85 년-1333 년)이후 무사계급에서 확립된 제도이다. 가마쿠라시대는 무사계급이 천황, 귀족계급과 분리되어 새로운 지배체제를 추구하며 막부를 열고, 봉건정치를 시작한 시대로, 이 시대에는 주군(主君)을 위해 목숨을 버릴 남성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무사의 이에(家)에 명예를 부여했는데, 이에를 존속 확립시켜 장남이 잇게 하는 제도가 발달했다. 가부장인 가독(家督)이 이에와 재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상속하고 일체의 권리를 전유하며 가족은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사고는 서민에게도 전파되었는데 1898 년에 제정된 민법에도 도입되어 ‘우리나라는 재래, 가족제도로 나라를 세운다. 민법 또한 그 제도를 채용한다’고 명기되었다(西清子 1985, 56-68).
- ⁴ 타로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요소로서 다음 5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새로운 단체의 참여, 기회의 증가, ② 체제 내 정치적 재조정이나 재편, ③ 영향력 있는 연합의 출현, ④ 정치 엘리트 간의 균열의 발생, ⑤ 국가 능력의 감퇴, 또는 반대를 억지하려는 국가의 의지(Tarrow 1998, 76).
- ⁵ 전전의 이치카와에 관한 자서전은 1974 년에 출판되었고 전후의 자서전은 이치카와 사후 1985 년 전전부터 운동의 파트너이자 이치카와기념회를 이끌었던 고다마 가쓰코(児玉勝子)에 의해 출판되었다.
- ⁶ 총 10 권으로 제 1 권에서 9 권까지의 자료집과 그에 대한 해제집이 별권으로 구성되어있다.
- ⁷ 본 글에서는 법률의 명칭 등 고유명사나 당시 문헌에서의 인용의 경우는 매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⁸ 신부인협회 이전에는 1894 년 청일전쟁 이후 군사원호, 가족원호를 목적으로 1901 년에 조직된 관제여성단체인 애국부인회가 있었다.
- ⁹ 여성을 지칭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인’이라는 용어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인’은 일정 연령에 달한 여성, 주부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일부에서 ‘여성’이 쓰이게 되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1997 년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 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성’을 사용하기로 정식으로 결정되어, 법조문 중의 ‘여자’, ‘남자’는 ‘여성’, ‘남성’으로, 그리고 ‘부인’은 ‘여성’으로 대체되었다. 본 글에서는 고유명사나 오래된 문헌으로부터 인용하는 경우는 그대로 ‘부인’을 쓴다.
- ¹⁰ 결성 당시는 부인참정권획득동맹(婦人參政權獲得同盟)이었으나 곧 부선희득동맹(婦選獲得同盟)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¹¹ 1950 년에 일본부인유권자동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¹² Women’s Liberation 의 약자 Lib 를 일컫는다.



참고문헌

- 야마시다 영애. 1996. “전후 일본의 여성운동.” 〈여성과 사회〉 6.
- 이지영. 2008a. “미 점령기 일본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학보〉 76.
- _____. 2008b. “일본의 고용평등정책과정-여성대표성, 가치·신념, 제도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 4.
- _____. 2009. “정책패러다임과 정책변화에 관한 고찰-일본여성정책을 사례로.” 〈일본연구논총〉 29.
- Beckwith, Karen. 2000. “Beyond compare? Women’s movemen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
- Gelb, Joyce. 2003. *Gender Politic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obayashi, Yoshie. 2004. *A Path Toward Gender Equality: State Feminism in Japan*. New York: Routledge.
- Samuels, Richard J. 2003. *Machiavelli’s Childre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cott, Joan W. 1988. “Deconstructing Equality versus Difference.” *Feminist Studies* 14.
- Tarrow, Sidney. 1998. *Power in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田中寿美子. 1969. 《婦人政策・婦人運動》. 田中寿美子 編. 亜紀書房.
- _____. 1975. 《女性解放の思想と行動》. 時事通信社.
- 市川房枝. 1974. 《市川房枝自伝: 戦前編》. 新宿書房.
- _____. 1999. 《市川房枝》. 日本図書センター.
- 伊藤康子. 1974. 《戦後日本女性史》. 大月書店.
- 児玉勝子. 1985. 《覚書 戦後の市川房枝》. 新宿書房.
- 西清子. 1985. 《占領下の日本婦人政策-その歴史と証言》. ドメス出版.
- 江原由実子. 1986. “乱れた振り子-リブ運動の軌跡.” 《日本の社会学10: 社会運動》. 似田貝香門, 梶田孝道, 福岡安則 編. 東京大学出版会.
- 女たちの現在を問う会. 1986. 《朝鮮戦争と逆コースのなかの女たち》. インパクト出版会.
- スーザン ファー. 1987. “女性の権利をめぐる政治.” 《日本占領の研究》. 坂本義和, R.E.ウォード 編. 東京大学出版会.
- 山下悦子. 1988. 《日本女性解放思想の起源》. 海鳴社.
- 国際婦人年連絡会. 1989. 《連帯と行動: 国際婦人年連絡会の記録》. 市川房枝記念会出版部.
- 塩原勉. 1989. 《資源動員と組織戦略: 運動論の新パラダイム》. 塩原勉 編. 新曜社.
- 鈴木裕子. 1989. 《女性史を拓く: 母と女, 平塚らいてう・市川房枝を軸に》. 未来社.
- 理想選挙推進市民の會. 1990. 《市川房枝たちの理想選挙》. 市川房枝記念会出版部.
- 国際女性の地位協会. 1992. 《女子差別撤廃条約注解》. 常学社.
- 村上千賀子. 1992. “日本における占領政策と女性解放.” 〈女性学研究〉 2.
- 山口みつ子. 1992. “女性諸団体の女性政策に対する合意形成過程-全国組織50団体の連帯と行動.” 〈女性学研究〉 2.
- 武田清子. 1994. “解説 市川房枝の人と思想.” 《市川房枝集別巻》. 市川房枝 編. 日本図書センター.
- 財団法人市川房枝記念会. 1994. 《市川房枝集》 1-6巻. 財団法人市川房枝記念会 監. 日本図書センター.
- 国際連合広報局. 1995. 《国際連合と女性の地位向上: 1945-1995(日本語版)》. 国際女性の地位協会.
- 菅原和子. 2002. 《市川房枝と婦人参政権獲得運動》. 世織書房.



市川房枝記念会. 2003. 《市川房枝 理想選挙の記録》. 市川房枝記念会出版部.

朴仁京. 2006. “日本の女性政策過程における女性団体—その影響力と限界.” 筑波大学人文社会科学研
究科博士論文.



필자약력

이지영_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츠크바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술로는 《지역통합의 국제정치경제(공저)》, “일본의 이주자 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의 생활정치 이념과 복지정책,” “일본의 고용평등정책과정 분석-가치·신념, 여성대표성, 제도적 구조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 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